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 체미정 주변 정비사업

구미가 배출한 야은 길재선생의 정신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하고 의의를 계승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체미정 주변 정비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취득재산】

< 당 초 >

- 토 지 : 57,474㎡ (남통동 248번지 외 6필지)
- 건 물 : 1,628㎡ (서원 등 12개동)
- 기 준 가 격 : 10,579,873천원

< 변 경 >

- 토 지 : 2,197㎡(남통동 산33필지 외 4필지)
※ 3필지 931㎡는 시유지
- 건 물 : 401.06㎡(수양각 외 3건)
- 기 준 가 격 : 3,393,396천원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5.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의거 채미정 주변 정비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 내용은

- 채미정 주변 정비사업을 위한 건립부지 남통동 산33번지 외 4필지 (2,197㎡/3필지는 시유지)를 매입하는 것과 수양각, 훈자실, 영상실 등의 건물(401.06㎡)을 신축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 본 계획안은

제18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받은 사항으로 2013년 4~6월까지 감사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재정사업 실태점검에서 유사사업 축소 대상으로 지적되어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임.

채미정 주변 정비사업은 구미가 배출한 야은 길재 선생의 정신 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 하고 열을 계승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한 부지매입과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취득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 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연도 예산을 시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